

# 광주광역시서구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1년 12월 20일

나. 회부일자 : 2001년 1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2001년 12월 28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지방세과장 이학범)

### (1) 제안이유

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등록관련 수수료를 신설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업관련업자 등록업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제증명등 수수료중 다음사항 반영(안 제3조중 “별표1”)

- 석유사업법 제9조, 제31조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신설

· 「석유판매법(주유소) 등록신청」 외 1종

-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46조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항목 신설

· 「유통관련업자 등록」 외 3종

-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

· 「사실묘지·사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 삭제

-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 삭제(주민등록사무편람 177쪽 참고)

·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삭제

○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를 구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

(안 제8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장 재 영)

안 제3조중 별표1에 관한 의견임.

별표1 중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총 8종으로서 삭제된 사항은 2종이고 신설된 사항은 6종임.

삭제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2종에 대한 의견임.

첫째,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사무임. 이번 개정안은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사무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자는 안이며 그 제안 사유로서는 수수료 징수 관련규정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는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사무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에 해당하는지, 열람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수수료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라 할 수 있겠음.

1주택 수가구 전기(수도)요금 감면 처리는 주민등록에 의한 거주가구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 만큼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수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음만 관련기관에 확인 송부하는 것은 거주가구수이고, 열람의 주체 또한 담당공무원이지 신청인이나 관련기관이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이 허용되는 것은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라 1주택 수가구 전기(수도)요금 감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전기(수도)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사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수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제4호의 수수료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며(수수료 징수관련 규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정안처럼 이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둘째,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에 대한 의견임. 폐지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 사설묘지의 구역변경 또는 시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허가나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시에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면서 종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부과했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는 삭제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설묘지·시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를 수수료 대상사무에서 삭제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다음은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6종에 대한 의견임.

첫째,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임. 종전의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으로 규정하였고(구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수수료 또한 산업자원부령에 따라 납부토록 하였음.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에서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소관사무로 규정하였고, 이들 사무에 대한 수수료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1조제1항).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사무에 관한 수수료 납부는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이 위임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하게 되어, 이들 사무에 대한 수수료 납부는 석유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구의 조례규율 사항이 되었음.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석유사업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함.

둘째,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임. 종전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이에 관한 수수료를 문화관광부령이나 광역시·도의 조례에 따라 납부토록 하였으나(제26조), 개정된 동법률에서는 음반 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이들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제27조제1항, 제28조 그리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신고 및 등록사무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6조제2항). 이번 개정안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대한 의견임.

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감면대상자의 하나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들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자는 것이라 하겠음.

전체적으로 보아 이번에 개정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폐로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자체가 삭제되었거나, 수수료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수료 징수기관의 이관에 의한 것이며,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에 따른 것으로 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광주광역시서구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p> <p>① (생 략)</p> <p>1. <u>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u>거택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u> <u>하는 제증명 등</u></p>	<p>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u> <u>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u> <u>등록하는 제증명 등</u></p>

